

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박형수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타인의 성명·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한 경우 등록 취소를 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(안 제66조제1항제7호 및 제74조제4호)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동 찬)